

##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|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|--|
| ①등록부             | 성명            | 한글                   | (성) / (명) |        | 주민등록<br>번호 | -   |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한자                   | (성) / (명) |        |            |     |  |
|                  | 변경 전<br>등록기준지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|  |
|                  | 변경 후<br>등록기준지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|  |
|                  | 주소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|  |
| ②기타 사항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|  |
| ③<br>신<br>고<br>인 | 성명            | (서명 또는 날인)           |           | 주민등록번호 | -          |     |  |
|                  | 자격            | ①본인 ②법정대리인 ③기타(자격: ) |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|     |  |
|                  | 주소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전화     |            | 이메일 |  |
| ④제출인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성명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| 주민등록번호     | -   |  |

## 작 성 방 법

※ 본 신고는 새롭게 변경하고자하는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에 하여야 합니다.

①란: 현재의 등록기준지와 새로운 등록기준지를 기재합니다.

②란: 신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는 취지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

④란: 제출인(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].

첨 부 서 류

※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 생략합니다.

1.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.
2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]
  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: 신분증명서
  - 신고인 불출석, 제출인 출석의 경우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(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,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)
  -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: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(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,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)

1.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.
2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]
  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: 신분증명서
  - 신고인 불출석, 제출인 출석의 경우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(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,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)
  -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: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(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,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)